

ESG위원회 규정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구 성

제 3 장 회 의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1. 위원회는 회사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부문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9조의 부의사항을 사전에 보고 받고 심의·승인한다.
2.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감사에게 내부거래 등 세부 현황자료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의무)

1.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5조 (구성)

1.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4.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3.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7조 (소집절차)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 소집시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12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승인사항
 - 1) ESG 전략 기본 방향 및 계획
 - 2) ESG 관련 중요 정책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
 - 4)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

2 보고사항

- 1) ESG 추진 활동 및 성과
- 2) ESG 관련 주요 동향
3.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회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회의의 진행사항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2. 간사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4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2년 8월 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초대위원장) 제 6 조에도 불구하고 초대 ESG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